

1. 개정이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법 제53조의2 신설)
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검토 대상·범위 및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안 제60조의2 신설)

- 사전검토 신청 서식 신설(제1항 및 별지 제51의2호 서식)
- 사전검토 대상 및 세부작성지침 명확화(제2항, 제3항)

나. 사전검토 신청 기준일 명시(안 제60조의2 제4항)

- 사전검토 신청 기준인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예정일자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8-9월), 규제심사(9-10월),
법제처심사(11-12월), 시행('23년 3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 신청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 신청은 별지 제51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③ 제2항 각 호의 세부작성지침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예정일자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중 “영 제82조의2제3항”을 “영 제82조의3제3항”으로 한

다.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2조의3제3항”을 “영 제82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의4제1항 중 “영 제82조의4제1항”을 “영 제8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2조의4제4항”을 “영 제82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1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 중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제1항”으로,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의3서식 중 “제53조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을 “제53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0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u> <u>사전검토 신청 등) ① 법 제53</u> <u>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u> <u>발생장치의 사전검토 신청은 별</u> <u>지 제51의2호서식에 따른다.</u> <u>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는</u> <u>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포함하여야 한다.</u> <u>1. 시설 개요</u> <u>2. 시설주변의 환경</u> <u>3. 운영계획 개요</u> <u>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u> <u>원</u> <u>5. 안전시설 개요</u> <u>③ 제2항 각 호의 세부작성지침</u> <u>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u>④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u> <u>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착</u> <u>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u> <u>14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u> <u>상의 착공예정일자로 한다.</u>		
제68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u>영 제82조의2</u> <u>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u>		제68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u>영 제82조의3</u> <u>제3항</u> -----		

자의 선임·변경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65의2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u>영 제82조의3 제3항</u>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② (생략)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u>영 제82조의4제1항</u>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u>영 제82조의4제4항</u>에 따른 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u>영 제82조의4 제3항</u>-----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u>영 제82조의5제1항</u>----- ----- ----- --. ② <u>영 제82조의5제4항</u>----- ----- -----.
--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1의2호서식]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8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선임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신고서
[]해임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허가증번호						허가일자	
선임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종류 번호		교육 과정명 수료일자	
변경 · 해임	기존 신고사항			변경·해임 신고사항		사유	
	직위	성명	선임일자	변경·해임일자			
	면허증			변경내용(변경신고에 한정함)			
	종류	번호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인력의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이수 증명서류 포함)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자격 등록증 포함) 사본 1부	
	3.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상호	
	주소	
	사업소(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지정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		[] 허가사용자		[] 신고사용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면허 또는 자격사항	취급경력	교육이력
	방사선안전 관리자					
	대리자					
	대리기간					
	대리사유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서명 또는 인)

999210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